

의안번호	제 416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6월 29일 (제349회)

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6년 6월 29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1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년 6월 29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,
- 주민참여예산연구회와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근거마련 등 위원회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규정 신설(안 제11조)
 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함
-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및 운영협의회의 역할 및 운영방법 규정신설(안 제18조, 제19조)
 - 연구회 및 운영협의회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, 구성 및 역할,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 등을 규정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제4조”를 “제5조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제6조”를 “제7조”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”를 “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별표와 같이 설치한다.
 1.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
 2. 주민의견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
- ② 분과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것으로 본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(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의 설치)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, 정책수립,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(이하 “연구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당연직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한다.
2.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분야 전문가, 사회단체관계자 등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.

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③ 연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,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④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예산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이 된다.

⑤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하거나 자문에 응한다.

1. 주민참여예산제 제도 개선방안
2. 주민참여예산제의 효과적인 홍보 및 활성화 방안
3.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

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,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(운영협의회)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 위원장은 운영협회의 위원장이 된다.
- ④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
 - 2.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하여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 - 3.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협의회 심의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분과위원회 설치 및 소관부서(제13조 관련)

명 칭	소 관 부 서	
	주관실국	부 서
일반행정 분 과	기획관리실 (정책기획관)	의회사무처, 공보관, 감사관, 기획관리실, 행정국, 충북도립대학, 자치연수원, 서울세종본부, 북부출장소, 남부출장소
복지여성 분 과	보건복지국 (복지정책과)	보건복지국, 여성정책관, 여성발전센터
문화체육 분 과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예술과)	문화체육관광국, 청남대관리사업소
경제환경 분 과	경제통상국 (경제정책과)	경제통상국, 바이오환경국, 보건환경연구원, 경제자유구역청
농 정 분 과	농정국 (농업정책과)	농정국, 농업기술원, 산림환경연구소, 축산위생연구소, 농산사업소, 내수면연구소
안전건설 분 과	재난안전실 (안전정책과)	재난안전실, 균형건설국, 혁신도시관리본부, 소방본부, 각급 소방서, 도로관리사업소

* ()은 주무과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의견 제출 절차) ----- ----- ----- <u>제4조</u> ----- ----- ----- .</p>	<p>제7조(의견 제출 절차) ----- ----- ----- <u>제5조</u> ----- ----- ----- .</p>
<p>제8조(결과 공개) ----- <u>제6조</u> ----- ----- .</p>	<p>제8조(결과 공개) ----- <u>제7조</u> ----- ----- .</p>
<p>제11조(구성 및 임기) ① · ② (생략) ③ ----- <u>연임할 수</u> <u>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</u> <u>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1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한 차례만</u> <u>연임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3조(분과위원회 설치) ① --- ----- ----- <u>별표와 같이 분과위원</u> <u>회를 설치한다.</u></p>	<p>제13조(분과위원회 설치) ① --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사항을</u> <u>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</u> <u>한 분과위원회를 별표와 같이</u> <u>설치한다.</u> 1. <u>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</u> <u>반영에 관한 사항</u> 2. <u>주민의견의 우선순위 결정에</u></p>

②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③ ~ ⑦ (생략)

제18조(협의회 등)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,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.

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

② 분과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것으로 본다.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설치)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, 정책수립,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연구회(이하 “연구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당연직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한다.

2.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분야 전문가, 사회단체관계자 등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.

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

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③ 연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,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④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예산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이 된다.

⑤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하거나 자문에 응한다.

1.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
2. 주민참여예산제의 효과적인 홍보 방안 및 활성화 방안
3.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

<신 설>

제19조(운영협의회)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운영협의회는 위원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장은 운영협의

<p><u>제19조</u> (생략)</p>	<p><u>회의 위원장이 된다.</u></p> <p><u>④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</u> <u>2.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하여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</u> <u>3.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협의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</u> <p><u>제20조</u> (현행 제19조와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관계 법령

□ 지방재정법

제39조(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(이하 이 조에서 "주민참여예산제도"라 한다)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□ 지방재정법 시행령

제46조(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)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

2.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

3. 사업공모

4.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·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·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